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9
----------	-----

제출년월일 : 1992년 10월30일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개정사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1992. 9. 17., 대통령령 제13727호)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액이 평균 10퍼센트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육위원의 여비를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여비지급 기준액 인상

- 현지교통비 : 4,000 - 4,500원 → 4,500 - 5,000원
- 숙박비 : 13,500 - 16,000원 → 15,000 - 17,000원
- 식비 : 9,000 - 10,500원 → 9,500 - 11,000원

나.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 현지교통비외에 식비도 지급

3. 예산조치

추후 추경시 반영

4. 참고법령(내용별첨)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별표 3에 의한 여비를”을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청주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의 출장”으로 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 공 운 입	자동차 운 입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의 장					갑 지 5,000	갑 지 17,000	갑 지 11,000	
부 의 장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800
위 원					을 지 4,500	을 지 15,000	을 지 9,500	

1. “갑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청 소재지 및 기타 시지역으로, “을지”는 갑지 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신 · 구조분대비표

현		정										안					
제1조 - 제7조(생략)		제1조 - 제7조(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위원회의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현지고용비와 식비만을															
②제1항에서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②.....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의 출장.....															
제9조(생략)		제9조(현행과 같음)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원)		[별표 1]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제7조 제1항 관련)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편고통비 (1일당)	숙박비 (10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0야당)	구분	철도 운임	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편고통비 (1일당)	숙박비 (10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0야당)
의장	1등 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특지 4,500 갑지 4,500 을지 4,000	특지 16,000 갑지 15,000 을지 13,500	특지 10,500 갑지 10,000 을지 9,000	800	의장	1등 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을지 4,500	갑지 17,000 을지 15,000	갑지 11,000 을지 9,500	800
의									부								
장									장								
의									의								
부									부								
장									장								
위									위								
원									원								

번	명	개 정 안
<p>1. "복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경주시, 광주시 및 제주시 등 "간지"는 도청소재지,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권역시, 의정부시, 안산시, 구리시, 원주시, 강릉시, 속초시, 홍주시, 이리시, 군산시, 목포시, 여주시, 나주시, 구미시, 포항시, 영천시, 마산시, 울산시, 진주시, 서귀포시로 "을지"는 기타 지역으로 한다.</p> <p>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허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p> <p>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p>[별표 2] (생략)</p> <p>[별표 3] (생략)</p> <p>위원회소재지내 출장시 예비지급기준표(제8조 제1항 관련)</p>	<p>1. "간지"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과천시, 도청소재지 및 기타 시 지역으로, "을지"는 간지 외의 지역으로 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p> <p>[별표 2] (현행과 같음)</p> <p>(각 제)</p>	
<p>여 행 거 리</p>	<p>지</p>	<p>금</p>
<p>12킬로미터 이상</p>	<p>별표 1의 현저교통비 전액</p>	<p>액</p>
<p>12킬로미터 미만 8킬로미터 이상</p>	<p>별표 1의 현저교통비의 5할</p>	
<p>8킬로미터 미만 2킬로미터 이상</p>	<p>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p>	
<p>2킬로미터 미만</p>	<p>지급하지 아니함</p>	
<p>비고) 대중교통이라 함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대중교통의 정기운행간격이 1시간이상인 지역에서 긴급요요 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 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p>		

부
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17일부터 적용한다.

(참 고 문 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 ①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별표 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 (제1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지급 기준액	철도 운임	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 고 통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시·도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5,000	17,000	11,000	800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5,000	17,000	11,000	800
시·군· 자치구	의장· 부의장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5,000	17,000	11,000	800
	의원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4,500	14,000	10,500	800

비고 : 1. 여행지에 따라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동일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 2 제17조의 2, 제17조의 4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